세무와회계저널 : 제1권 1호(2000년 5월).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Vol.1, No.1(May 2000).
pp.43~74.

稅務行政에서의 電子申告制度 導入에 關한 硏究

이 강 호 · 그리스도 신학대 경영정보학부 전임강사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정보의 네트워크화·멀티미디어화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경제행위에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사이버 쇼핑몰(Cyber Shopping Mall) 및 전자화폐 등의 신개념들이 도입되어 종래의 상행위가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은 사회전체의 정보화를 급속히 촉진시켜 행정업무의 정보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세무행정에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과세관청의 행정효율화를 제고하고 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7월에 국세청은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자신고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발전단계에 접어든 미국의 예와 많은 논의와 시험을 끝마친 일본의 예를 통하여 우리 나라 도입 시 고려해야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우리 나라의 소득세 신고체계는 확정신고를 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세무환경 차이의 인식 하에 전자신고제도가 발전하려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완전한 페이퍼레스(Paper-less)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면확인서 등을 배제시켜야 하며, 부정신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보화의 발달과 함께 역기능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네트워크상에서의 인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보강도 요청된다. 이러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 나라의 기존 세무대리인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주제어〉 전자신고제도, 국세통합시스템, 세무행정정보화

Ⅰ. 序 論

최근 컴퓨터관련 기술의 눈부신 성장과 보급은 사회 여러 방면에 큰 영향을 기치고 있다. 민간기관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가 일반화 되어있다. 한편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으로 기존의 상거래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행해지는 전자상거래가 국경을 초월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종래의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며, 행정 효율을 항상 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 각국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화를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1990년대 초부터 국가사회 정보화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93년부터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지식정보 인프라의 조기구축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정보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수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IMF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부, 기업, 개인의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이버 코리아 21(Cyber Korea 21)을 발표하였다.

사이버 코리아 21의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1]하는 것이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정부조달, 국고 수납 지출 등의 업무를 정보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는 새정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우편 ·전자신고 (인터넷 신고) 등을 활성화 할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그 결과, 국세청은 전자신고제도 도입 방침을 확정하고 1999년 7월부터 시스템개발에 착수하였다.

---

1) '사이버코리아 21'의 부제는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비전'으로, 여기에는 3대 기본목표가 있다. 그 가운데 전자정부는 '국가전반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 목표로서 제2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본 논문은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현 시점에서 이미 도입하여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미국과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일본의 예를 통하여 우리 나라 도입 시 고려해야할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에서는 세무행정에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는 현상과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신고제도의 일반적인 방법들과 공통된 특징들을 소개한다. 제 3장은 미국의 전자신고제도의 구체적인 예로서 최근의 현상과 전자신고 방법 그리고 전자신고대행업자에 관하여, 제 4장은 아직 도입은 하고 있지 않으나 그 동안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듭하여 실험까지 수행한 일본의 예를 소개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과 미국 및 일본의 예들을 통하여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우리 나라의 정책수립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 5장에서 제시하고 결론을 유도하도록 한다.

Ⅱ. 稅務行政의 컴퓨터화와 電子申告制度

1. 세무행정의 컴퓨터화

우리 나라의 「1999년 국세행정 운용방향」에 의하면, 그 동안 사람에 의하여 관리되어 온 세원관리를 전산시스템 관리체제로 혁신하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국세행정을 지식경영체제로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행정의 전산화·효율화·전문화의 지속적 추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종전의 세목별·자료별 위주의 단편적 세원관리를 지양하고, 재화·용역거래, 원천별 소득자료, 소비지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인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 특례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세통합전산망(TIS: Tax Integrated System)을 개인별로 과세정보를 평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의 내국세입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조직[2]의 근대화를 위하여 조세행

2) 미국 내국세입청의 조직은 본청(National Office)과 그 밑에 세입국 (Regional Office), 세입국 밑에 세무서(District Office)가 존재하고 있다. 중앙 컴퓨터 센터(National Computer Center)와 데이터센터 (Data Center)는 본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서비스 센타 (Service Center)는 세입국에 소속되어 있다.

정시스템의 기계화의 촉진 (TSM: Tax System Modernization)을 논의해 왔었다. 그 주된 목적은 행정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다.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전자신고제도가 등장하였다. 내국세입청의 조세행정 현대화의 중심이 되는 비전은 금후 컴퓨터화 된 미래 사회의 세무행정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납세협력의 촉진, 납세자 부담의 완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납세자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목적들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납세협력의 촉진 및 납세자의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자신고제도 이다.

일본 국세청은 1988년에 세무정보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래에 사용하고 있던 ADP시스템[3]에서 KSK(Kokuzei Sogou Kanri)시스템으로 전면 이행 및 재개발에 착수했었다. 새로운 시스템의 목표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7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①폭넓은 업무를 기계화한다. ②이용하기 편한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③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④ 여러 가지 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한다. ⑤최신기술을 흡수할 수 있게 한다. ⑥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⑦국가의 정책에 부응하게 한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전국 국세청과 세무서를 전용 디지털 회선으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이제까지 지역 및 세목에 따라 제각각 이었던 납세자의 이동정보를 일원관리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세무행정에 전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무행정의 컴퓨터처리에는 신고사무처리가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사항에서 납세자의 확인, 납세자 명부의 작성, 신고서의 송부처 기입, 신고액의 검산, 집계 등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업무의 폭은 넓다.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각종 통계 및 수치를 이용하여, 국세청은 신고내용에 관하여 심사 및 검토를 하여 부적정한 신고를 심사하게 된다. 그 동안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여 전산화하고 정보를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목적은 신고사무의 성력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정보를 재 이용 하는데 있다. 이러한 입력 과정을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전자신고이다.

---

3) 일본 국세청의 컴퓨터화는 1966년 동경세무국에 Automatic Data Processing (ADP) 센터가 개설되어, 컴퓨터에 의한 사무처리가 개시되면서부터 이다. 그 후 1983년에 국세청 사무관리 센터가 개설되어 전국의 세무국 관내 사무의 컴퓨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1987년에 전국 세무서에서 주요한 업무의 컴퓨터 처리가 완료되었다.

2. 전자신고 방법

미국의 경우 연방 과세청인 내국세입청이 사무합리화를 목표로 1982년에 광학문자판독장치 (OCR:Optical Character Reader)신고방식을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다음해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1989년부터 국세의 일부 세목에 OCR을 활용한 신고데이터 입력방식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방식들은 신고데이터를 자동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세무행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신고방식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OCR대응 신고는 본질적으로 문서신고의 형태이지 전자신고방식이 아니다. 오독 (誤讀) 내지 판독 (判讀) 불능 등이 원인이 되어 과세청 내부에서의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OCR대응 문서신고는 과세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수정하고 재 입력하는 작업을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OCR대응형의 신고방식은 잠정적인 입력방식으로 세무행정에 도입되었다.

장래에는 페이퍼레스(Paper-less) 신고방식인 전자신고(Electronically Filing System, Electronically Filed Return System)가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국세입청의 경우 신고서류의 입력작업에 아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수표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서면에 의한 업무가 폭증하여 정보화를 방해하고 있다. 즉, 납세신고서와 납세액에 상당하는 수표가 각 과세청인 서비스센터(Service Center)에 우송된다. 수표의 처리는 개봉에서 시작하여 개별 수표의 번호부여 및 신고서와의 조회를 거쳐 금융기관에 송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면에 의한 수작업 사무자체가 납세업무 처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전자신고에는 신고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식과 본인이 직접 행하는 신고 방식이 있다.

가. 신고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신고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란 세무신고 시에 지금과 같이 서면에 의한 신고를 대신하여, 신고대리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또는 법정자료 등의 신고 데이터를 세무당국에 송부하는 신고방식이다. 이와 같은 전자신고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의 일부국가도 실험하고 있다. 세목은 거의 모든

국가가 소득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본인 신고

본인신고방식에는 온라인 신고와 전화신고가 있다. 온라인 신고는 납세자가 컴퓨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대행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행하는 전자신고방식이다. 해커(Hacker)대책 등 데이터 시큐리티(Security)의 문제가 해결되면, 퍼서널 컴퓨터 단말기에서 정보통신회선 또는 인터넷(Internet)을 사용하여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부터 연방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착신자(과세청) 부담 전화회선과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한 본인신고방식인 온라인신고(On-Line File)가 시행되었다.

전화신고 (telephone filing, Telefile)란 납세자가 푸쉬폰(Push Phone)회선을 사용하여 과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납세신고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확정신고를 행하는 제도이다. 전화신고는 넓은 의미에서 전자신고의 한 종류라 말할 수 있다. 단 전화신고는 전자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컴퓨터 단말을 통하지 않고도 페이퍼레스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화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소득만으로 생활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납세자든지, 그다지 복잡한 세무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신고방식이다.

3. 전자신고 도입국들의 공통점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제도적·사회적으로 공통된 배경을 갖고 있다. 첫째, 각각의 신고 방식은 상이하지만 모두 납세자번호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납세절차가 정비되어 납세자의 권리가 확립되어 있으며, 이를 더욱 옹호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제도의 개혁 및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확정신고를 Tax Retur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세금의 과납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환급신고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세무당국은 신속한 신고서 수리와 내부처리를, 그리고 납세자는 신속한 환급금의 교부를 원하고 있다. 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공통된 이익으로 연결되어 전자신고제도의 도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전자신고는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 받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테스트에 합격한 업자를 통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간단한 서면에 의한 신고서 및 관련 증거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캐나다에서는 이와 같은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오스트리아도 개인 소득에 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자를 통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방식은 같다. 확정신고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소위 「전문업자」로 한정한 것은 대다수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못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4. 전자신고의 장점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자적으로 신고서가 처리됨으로 입력오류가 거의 없어지며, 또한 자동적으로 일괄 처리됨으로 처리 속도가 대폭적으로 단축된다. 그리고 문서 신고서를 위한 넓은 보존공간과 정리에 필요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나아가 신고서 수리단계에서 오류를 체크하기 때문에 신고오류가 거의 없어진다. 한편, 납세자 측면에서 보면 세금의 환급이 아주 빨라진다. 미국의 경우 서면신고에 의한 환급의 경우, 종래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를 경우 환급까지 6주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전자신고에 의할 경우에는 3주 정도로 환급이 단축되어 전자신고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Ⅲ. 미국의 電子稅務行政과 電子申告制度

1. 미국의 전자세무행정 계획

미국의 내국세입청 개혁안이 1998년 5월에 미 상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승인되었다. 이 안은 증거책임을 납세자로부터 과세당국에 전환시켰으며, 종래 변호사와의 사이에서만 인정되었던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회계사(C.P.A) 및 세무대리사(E. A)에게까지 확대시키는 등 이제까지의 과세제도를 근본부터 개혁하는 아이디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행 내국세입청의 조사, 징수, 사찰 등의 기능별 조직을 개인, 법인, 비과세

단체라는 납세자별 조직으로 개정하고, 현재 지방 국세국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중앙에 집중시켜 국세국을 폐지하는 등 대담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내국세입청은 1998년 구조 개혁법에 의하여 전자세무행정(Electronic Tax Administration)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내국세입청과 납세자가 정보교류 하는 것들을 개혁하기 위하여 전략 및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 관련 업계를 경쟁시켜 세무 행정을 자극·발전시키며, 방해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계획이 수립되었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① 2007년까지 모든 세무 및 정보신고의 전자신고 비율을 80%까지 끌어 올리며 ② 중간 목표로서 모든 신고서를 2001년 초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고가 필요 없는 세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내국세입청은 의회에 매년 그 진척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납세자들이 내국세입청에 전자신고까지도 필요치 않게 하는 것으로 2000년 6월 30일에 의회에 첫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의 전자신고 대상 세목에는 크게 연방세(聯邦稅: Federal Tax)의 경우와 주세(州稅: State Tax)가 있다. 연방세의 신고는 내국세입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각 서비스 센터에서 행하여 지고 있다. 내국세입청의 서비스센터에는 매년 총수 2억건이 넘는 개인 및 법인의 납세신고서가 제출된다. 또한, 이외에도 수천만건의 정보신고서가 문서신고의 형태로 제출된다. 이러한 신고서의 수는 납세자의 자연증가, 세제의 복잡화 및 그에 따른 부속서류의 필요와 맞물려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신고건수가 이와 같이 많은 것은 급여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많이 행하여져 확정신고로 환급 받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자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내국세입청의 가장 큰 과제로 되어 있다. 이번의 내국세입청의 개혁안도 그 동안 조사 및 징수라는 권한행사 분야에 집중해온 것에 대한 비판에 따라, 급여소득자 등에게 더욱 친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전자신고의 증가에 대응한 컴퓨터 시스템의 근대화 및 내국세입청의 업무전체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2. 전자신고제도의 발전 과정

미국의 전자신고제도는 1986년 연방 개인소득세에 시험적으로 도입되었다. 소수의 세무 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자 수가 25,000명 정도로 최초의 시험 사업이 진행되었다.

지난 12년 동안 내국세입청은 전자신고제도를 확산·보급시키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들을 내 놓았다. 그 결과 납세자 5명중 1명 정도가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국세입청은 〈표 1〉과 같이 여러 가지 장려 시책들을 추진해 왔었다.

〈표 1〉 전자신고를 위한 주요한 시책

년 도	주 요 시 책
1986	전자신고 제도에 대한 첫 파일럿 시행
1990	전국으로 전자신고제도를 확대
1991	연방세와 주세를 합한 전자신고제도 시행
1992	전화신고제도 시행
1994	온라인 신고제도 시행
1996	전화신고제도의 완전한 페이퍼레스화
1998	내국세입청의 e-file 캠페인 시작

전자신고 파일럿이 1986년에 시행된 후, 내국세입청은 1989년에 정식 시스템으로 도입하였다. 이해에 1백만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하였다. 큰 증가를 보인 것은 다음해인 1990년이다. 그 이유는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에서 연방세와 주세를 한번의 신고로 가능하게 하는 전자신고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급속히 보급[4]되어, 지금은 연방세와 주세의 단일 전자신고제도는 37개주와 콜롬비아지방으로 확산되었다.

1991년에 내국세입청은 전화를 이용한 전자신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이듬해에 운용에 들어갔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한번에 약 10분 정도의 통화로 전자신고를 완료하게 된다. 신고가 완료되면 증명을 위하여 신고확인 번호가 주어진다. 전화신고는 쉽고, 빠르며, 무료로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어 뚜렷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8년에는 24.6백만 전자신고 중 6백만명의 납세자가 이 시스템을 사용했다.

90년대 중반에 내국세입청은 또 다른 전자신고의 형태로 온라인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내 놓았다. 이 방법은 납세자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다. 1995년

4) 1998년의 연방세 및 주세 단일 신고 이용자는 전년도 6백 9만명에서 8백3십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에 약 1,000명이 온라인 신고 시험사업을 통하여 제한적 전자신고를 행하였으나, 1998년에는 약 백만명이 신고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한편, 전자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세금의 부정환급 증가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내국세입청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일련의 방지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컴퓨터 체크에 의한 방지책이 너무 엄격하여 불수리되는 전자신고가 속출하였다. 때문에 95년도에는 전자신고를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체건수가 감소를 보이고 있다.

개인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신고제도가 성숙해 감에 따라, 내국세입청은 전자신고제도의 장점에 대하여 더욱더 많이 교육·홍보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98년 광고업자와 연합하여 내국세입청은 「아이알에스 이파일 (IRS e-file)」 홍보 캠페인을 펼치게 되었다. 이러한 홍보 캠페인은 1999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 〈표 2〉 [5]와 같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전자신고 프로그램 및 홍보 결과 지난 12년 동안 전자신고제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표 2〉 전자신고 이용자 통계 (단위: 천명)

년도	대행업자	전화신고	온라인신고	합 계
1986	25			25
1987	78			78
1988	583			583
1989	1,200			1,200
1990	4,200			4,200
1991	4,500			4,500
1992	10,900	125		11,025
1993	12,300	149		12,449
1994	13,500	579		14,019
1995	11,100	680	1	11,781
1996	12,100	2,800	158	14,968
1997	14,400	4,700	367	19,149
1998	17,668	5,962	942	24,599

5) 1996년과 1997년의 온라인 신고 이용자 통계는 대행업자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

3. 전자신고 유형

개인의 전자신고 방법에는 전화신고 (Tele File)와 온라인 신고 (On-Line Filing)가 있다. 그리고 신고대리업자의 지원을 받아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행업자에게 유료로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이차적인 방법으로서 1040 PC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프린트하여 우송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광의의 의미에서의 전자신고 방법으로 CD-ROM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을 배포 받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저소득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의 전자신고를 돕기 위하여 전자신고 지원 자원봉사조직도 존재한다.

내국세입청은 전자신고에 대하여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리인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없다. 이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3주정도 만에 신고자의 계좌에 과납분이 환급됨으로 종래의 서면에 의한 환급 신고의 경우와 비교하면 기간이 반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종래의 서면 신고방식과 비교하여 전자신고는 정확하고 간단하며 환급까지 기간이 단축되며, 세금의 부족액을 4월 15일 까지만 지불하면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다음은 전자신고의 여러 가지 신고 방식의 개요를 설명한다.

가. 공인된 신고 대행업자에 의한 전자신고

이 방법은 내국세입청이 실시하고 있는 「공인된 전자신고 제공자」(Authorized IRS e-file Provider)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를 통하여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행하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는 내국세입청에 세무 신고 정보를 전송하는 전자 신고 발신자 (EROs: Electronic Return Originators)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납세자가 ERO에게 전자신고를 의뢰한다. 이때에 서식 8453 (전자신고를 위한 개인소득세 신고서)가 ERO에 의하여 작성되어 진다. 납세자가 서식 8453에 서명하면, 전자신고를 위한 서명서로서 역할을 한다. 이 서명서는 ERO가 납세자를 위하여 신고서를 전송하게 하며, 환급금을 저축예금 또는 당좌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ERO는 서명을 받은 후,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내국세입청에 전송하게 된다. 내국세입청은 전자 신고를 접수하여 오류 및 신고 누락을 컴퓨터로 검사하여 접수한다. 서면에 의

한 신고서의 경우에는 20-21%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지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이하다. 이때에 전자신고가 컴퓨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내국세입청은 ERO에게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통보를 하게 된다.
전자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업무시간 기준)이내에 내국세입청은 신고서가 접수된 것을 통지하게 된다. 이것으로 내국세입청이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접수했다고 하는 증명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ERO는 납세자의 서명이 들어 있는 서식 8453을 내국세입청에 송부하게 된다.

나. 전화 신고(Tele File)

독신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자로서 신고 안내서와 푸쉬폰(Push Phone) 전화기만 가지고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전화신고는 무료 24시간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하면 약 10분정도 만에 환급신고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신고제도에 의하면 자동적으로 환급액 또는 부족액이 계산되어, 자동환급금은 은행계좌에 송금된다.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표를 발행하여 우편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 서비스의 이용 자격자는 1040EZ라는 양식으로 신고를 한 개인으로 당해 연도 초에 65세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이 시간급·일급·주급 등의 임금 (Wage), 봉급 (Salaries), 팁 (Tips), 과세대상 장학금·연구보조금, 실업수당, 이자 (400달러 이하 원천징수공제가 없는 것),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s인 경우에 전화신고를 할 수 있다.

다. 온라인 신고 (On-Line File)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컴퓨터와 모뎀(Modem) 그리고 송신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자는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프로바이더(Service Provider)를 경유하여 내국세입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의 신고회사 (Filing Company)는 신고된 임의의 포맷(Format)을 내국세입청이 규정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송부한다. 내국세입청은 이러한 온라인 신고를 접수·감사하여 수리 여부 결과를 신고회사에 통보한다.

만약 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회사는 고객지원의 일환으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어 수정 신고하게 한다. 내국세입청이 납세신고서를 수리하면 납세자는 8453-OL

(온라인 신고를 위한 개인 소득세 신고서)이라는 전자서명 문서와 서식 W-2(임금 및 세금 진술서) 그리고 관련서류들을 제출해야만 한다.

라. 자원봉사 기관을 통한 신고

전자신고를 하는데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신고자를 위하여 자원봉사 기관들이 돕고 있다. 영어를 말할 수 없는 자, 저소득자 및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 VITA(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TCE(Tax Counseling for the Elderly)등이 전자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도서관이나 쇼핑몰,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곳에 설치되어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곳에는 내국세입청에서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전자신고의 절차 및 신고에 대하여 무료로 업무처리를 해 주고 있다.

마. 전자 서명 파일럿

서식 1040(개인 소득세 신고서) 전자신고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서 신고가 진행된다. 첫 번째,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전송한다. 두 번째, 신고자의 서면 서명서 (서식 8453 또는 서식 8453-OL)를 내국세입청에 우송한다. 이 단계에서 서면 서명서가 전자신고의 확산을 저해한다는 인식 하에서 내국세입청은 온라인 파일럿 (On-Line Pilot)과 신고대리업자 파일럿(Practitioner Pilot)을 통하여 전자서명 시험사업을 1999년에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파일럿은 PC와 모뎀을 가지고 납세 준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파일럿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자신고 고객 번호(ECN: e-file Customer Number)를 내국세입청 으로부터 발급 받아야한다. 내국세입청은 온라인 전자신고를 하고 있는 납세자중에 선택하여 전자신고 고객 번호를 제공한다. 올해 1월까지 약 7백만명이 고객번호를 발급 받았다. 이러한 고객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18종류가 있다.

신고 대행업자 파일럿은 내국세입청이 선정한 3개 조직 (H&R Block Tax Service, Intuit inc., National Association of Enrolled Agents)으로부터 제공된 명단가운데 8,100개소의 대행업자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선정된 신고 대행업자들을 통하여 납세자들은 전자서명을 사용한 전자신고를 행한다. 이때에 납세자는 개인 인식 번호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신고 대행업자도 전자서명을 사용한다.

이러한 시험사업의 결과에 따라 내국세입청은 그 동안 전자신고제도를 방해하여 왔던 서면 서명서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

4. 전자신고 대행업자

가. 전자신고 가능한 납세자

미국에서 전자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전년 12월 1일까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한 신청서를 내국세입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 신청이 승낙되면 전자신고 ID가 교부된다. 이 때에, 납세자는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한다. 그것이 곧 납세자번호가 된다. 세무서는 확정신고시 일반의 질문에 응하고 있으나, 전자신고 가부의 판단은 대행업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

나. 전자신고 절차

전자신고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고 의무자는 내국세입청의 공인된 전자신고 대행업자에게 서면 신고 정보의 데이터 처리 및 전자송달을 의뢰한다.

(2) 공인된 전자신고 대행업자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이 자료를 내국세입청에 통신 회선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3) 전자신고 전송을 받은 내국세입청은 기본적인 확인을 행한 후, 당해 전자신고서의 수리·불수리를 통보한다.

(4) 수리 통지를 받은 경우, 전자신고 대행업자는 다음 영업일 까지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신고 의무자 본인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고, 전자신고 대행업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내국세입청에 우송한다.

다. 전자신고 대행업자 범위

전자신고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수기한 본인의 신고정보를 유료로 신고업무를 대신해 주는 공인된 전자신고 대행업자(Authorized IRS e-file Provider)에게 의뢰한다. 내국

세입청은 공인된 전자신고 대행업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넓게 정의하고 있다.

(1) **전자신고 발신자** (ERO: Electronic Return Originator) : 다음과 같이 2종류가 있다.

① 전자신고 작성자 (Electronic Return Preparer):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를 위하여 서식 8453(개인소득세의 전자신고에 관한 확인서)을 포함하여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는 자.

② 전자신고 수집자 (Electronic Return Collector) :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로부터 서식 8453을 포함한 완성된 확정신고서를 수집한 자.

(2) **처리서비스 업자**(Service Bureau): 세무신고서의 정보를 어떠한 미디어를 통하여 ERO로부터 받아 신고서를 포멧화하고, 신고서 정보를 전송자(Transmitter)에게 전송하든지 또는 ERO에게 되돌린다. 처리서비스 업자는 서식 8453을 해당된 내국세입청에 보낸다.

(3) **소프트웨어 개발자** (Software Developer): 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를 말한다. ① 내국세입청의 출판 1346(개인소득 확정신고를 위한 레코드 레이아웃과 전자 확정신고 사양서)에 따라 신고서의 전자화 부분을 포맷화 한다. ② 내국세입청에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전송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도 있다.

(4) **전송자** (Transmitter): 내국세입청에 신고서의 전자처리 된 부분을 직접 전송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 전송의 효율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송자 이다. 데이터 전송 효율화 서비스 제공자란 공공전화망을 통하여 내국세입청에 전송될 정보(포멧화 또는 재 포맷화된 정보)의 전송율 또는 회선속도를 증진하는 자를 말한다. 내국세입청은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 전송을 수용하고 있다.

전자신고 대행업자의 분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ERO는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따라 전송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처리서비스 업자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종래부터 있었던 납세신고 작성자(Income Tax Return Preparer), 내국세입청 등록 세무대리사 (Enrolled Agent), 공인회계사 (CPA), 변호사 등, 소위 「세무 신고 대리 전문직」들도 의뢰자의 전자신고를 대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공인 전자신고 대행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라. 전자신고 대행업자 등록

공인 전자신고 대행업자가 되기 위하여 소관 내국세입청으로부터 서식 8633인 「전자신고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Electronic Filing Program)」를 입수하여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자 관할 내국세입청 서비스 센터에 1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내국세입청은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이제까지 납세신고 대리인으로서의 경력, 납세력, 금융 및 일반 범죄의 유무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세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심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다.

인가를 받으면 내국세입청으로부터 전자신고자 인가번호[6] 등이 기재된 인가증을 받게 된다. 이 번호는 납세자의 의뢰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행하는 공인 전자신고 대행업자의 신원확인에 사용된다.

마. 인가자격의 엄격화

내국세입청은 전자신고 대행업자의 인가를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 예를들면, 공인 전자신고 대행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 법인 및 파터너 쉽인 경우에는 책임임원 및 파터너가 21세 이상의 미국 국적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문(Fingerprint Card)도 제출해야 한다. 즉, 신청자가 내국세입청 등록세무대리사(E.A),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품행 방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공개회사의 임원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문제출은 의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청자의 신용도 확인, 전자신고에 필요한 컴퓨터 지식, 그 지식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심사하게 된다.

그 외에 복수의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광고의 규제, 부실 입력, 데이터의 누설·부정입수, 내국세입청으로부터 경고 무시, 고지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인가 정지처분 대상이 된다.

---

6) 전자신고 발신자 (Electronic Return Originator)와 전송자(Transmitters)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Software Developers)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나 온라인 소프트웨어 패캐지에 대하여 EFIN (Electronic Filing Identification Number)을 내국세입청으로부터 받는다. 전송자 (Transmitters) 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Software Developers)는 테스트를 위한 패스워드와 ETIN (Electronic Transmitt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으며, 처리 서비스 업자 (Service Bureau)는 SBIN (Service Bureau Identification Number)을 EROs와 주문 중개소 (Drop-off Collection Point)는 CPIN (Collection Point Identification Number)을 받는다.

바. 전자신고 대행업자의 책무

인가를 받은 신고자에게 내국세입청은 「개인 소득세 신고의 전자신고자용 안내서」(Hand book for Electronic Filers of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내국세입청 출판물 1345호)를 발송한다. 이 출판물은 공인 전자신고 대행업자의 업무 범위 및 주의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공인 전자신고 대행업자가 내국세입청, 납세자, 동업자 등에 대하여 직업상 감당해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Ⅳ. 日本의 行政情報化와 電子申告制度 實驗

1. 일본의 행정정보화

일본은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을 1995년에 수립하였다. 그후, 중앙정부의 1인 1PC, LAN(Local Area Network)의 보급,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에 의한 전자상거래 발달, 신청절차의 전자화 등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에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7]을 개정하였다.

---

7) 일본의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은 1995년에 제정되어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고 있다. <그림 1>은 1997년에 개정된 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1〉 일본의 행정정보화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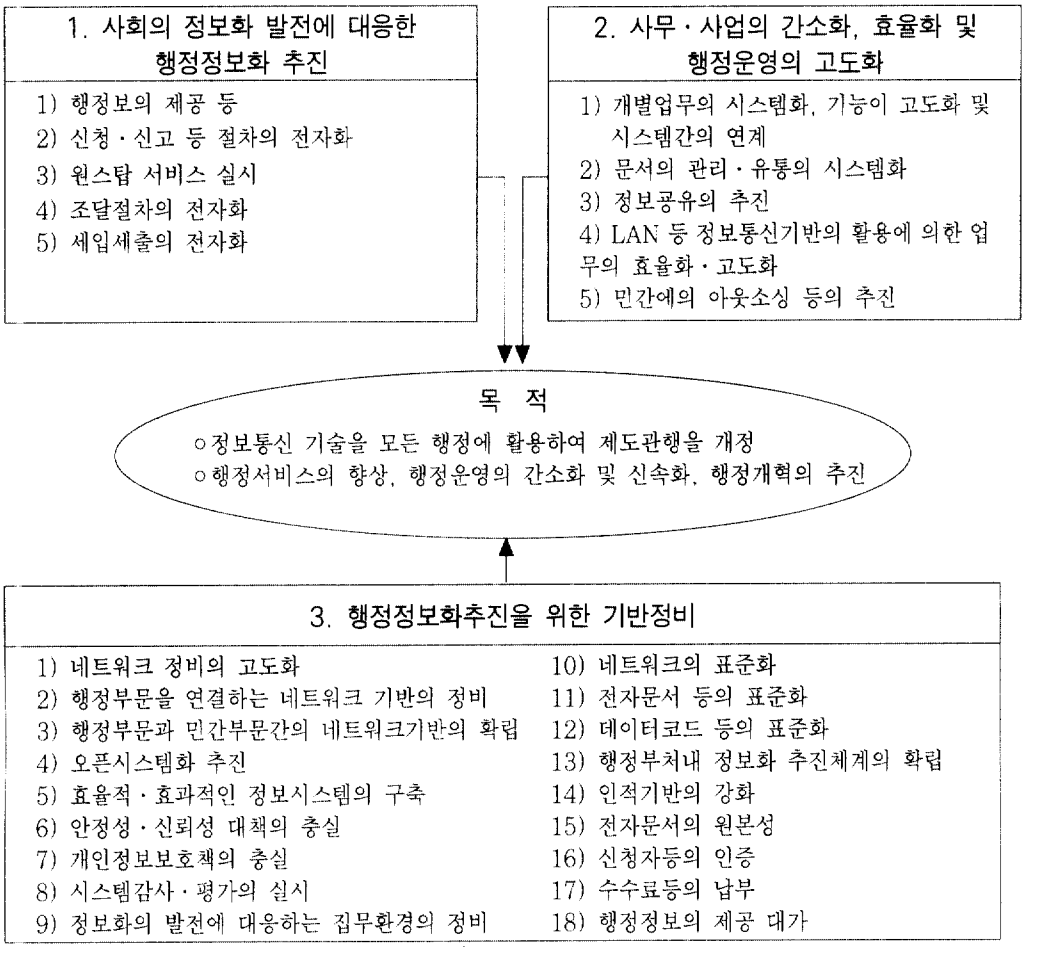

일본의 세무행정 정보화계획은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의 한 부분으로 수립되어 있다.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의 주요 목적은 〈그림 1〉과 같이 국가 전체의 행정효율 향상을 위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및 관행을 개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사회 정보화 발전에 대응한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며, 둘째 사무・사업의 간소화 및 효율화와 행정운영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셋째 행정정보화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여 구체화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 중 세무행정 정보화계획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무행정 정보화계획으로 사회의 정보화 발전에 대응한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신

청·신고 등 절차의 전자화 와 세입세출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세무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고도화는 물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종합적인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정비 사업으로 행정부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반을 정비하며, 전자문서 및 데이터코드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전자문서의 원본성, 신청자(납세자)의 인증, 개인정보보호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 각종 신청·신고서 절차의 전자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을 세무행정 절차에 비춰서 설명하면, 납세신고 및 정보신고 (법정자료의 제출)등의 전자신고가 주요과제로 등장한다. 한편, 일본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신청·신고서는 총 8,822건으로, 그 가운데 진정성(眞正性)의 보증이 문제가 되어 당분간 전자화가 곤란한 5,399건을 제외한 3,423건이 전자신고의 대상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말까지 약 90%에 해당하는 3,040건을 전자화 할 예정이다.

2. 세무행정의 정보화

일본의 세무행정은 1963년경부터 시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는 소득세, 법인세, 채권관리 시스템의 내부사무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된 뱃지(Batch) 처리방식 이었다. 이제까지 사용해 왔던 정보시스템은 지방국을 지원하지 못했던 것으로, 1983년에 종합 온라인 시스템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도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 중에 발전한 사무자동화의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결국 전근대적 시스템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고도화·종합화의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신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사무 자동화, 페이퍼레스화 등의 방침을 내세워 국세청은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1989년 12월부터 세무행정에 광학문자판독장치(OCR: Optical Character Reader)를 활용한 신고정보 입력방식[8]이 소비세의 도입과 함께 채용되어 새로운 국세종합관리(KSK) 시스템이 탄생하게 되었다.

KSK시스템의 도입목적은 최근 경제거래의 복잡화·광역화 및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 등 세무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세무

8) 결국 OCR에 의한 입력방식은 오독 및 판독 불능 등의 이유로 실용화 되지 못하였다.

행정의 효율화·고도화를 도모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처리기술의 도입을 위한 것이다. KSK시스템은 1995년 7월 1일부터 동경국내 2개 세무서에서 시험적으로 운행하여, 그후 순차적으로 보급되어 1997년 11월에는 동경국내 전 세무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올해에는 오오사카국이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KSK시스템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원천소득세, 인지세, 휘발유세 등 각종세목의 시스템 외에 채권관리, 자료정보, 재산평가 관계 등의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다.

KSK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세무당국은 컴퓨터로서 처리된 각종 세무데이터의 범위가 확충되고 각종정보를 보다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추진에 크게 도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납세자번호제, 행정공통번호제의 도입

KSK시스템의 도입배경에는 행정세제조사회에서의 세무행정의 기계화에 대한 논의가 발단이 되었다. 세무행정의 온라인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세정책상의 주제는 납세자번호제도이다. 현재 행정기관간에는 일본 국민 납세자 개개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컴퓨터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전국공통의 식별번호제도 또는 식별번호카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부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행정부처별 식별번호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게 되면, 각 부처간의 시스템 상호 접속 및 데이터의 조회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종적(縦的)행정번호」를 통일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1989년 1월에 「세무 등 행정분야에서의 공통번호제도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검토회의」가 설치되어 「국민식별번호제도」가 검토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National Database)를 두어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국민정보를 한군데 집약하여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종적행정체계 하에서는 국민정보의 관리 및 지배권을 둘러싸고 각 부처간의 고집으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신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집중관리형에서 각 부처에 분산된 형태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상호간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관리형」방식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가고 있다. 이 방식에 의하여 각 부처에서

분산관리 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상호이용 및 조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모든 입력정보를 생애 불변의 식별번호로 관리할 필요가 발생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식별번호의 부여방법으로 현재 국민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대장이 유력시 되고있다. 또한 법인인 경우에는 「번호부여기관」인 법무부이나 등기소에서 번호를 교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자신고제도의 실험

일본 국세청은 1995년 10월 5일에 개최된 전국 국세국장 회의석상에서 21세기를 향한 중장기적인 세무행정의 미래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신고제도의 도입에 관한 과제의 검토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994년 3월에 담당관을 미국의 내국세입청에 파견하여 선진국들의 전자신고제도와 그에 따른 최신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관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다. 1999년 6월에는 국세청이 「신고절차의 전자화 등에 관한 연구회」를 결성하여 전자신고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한편, 민간 단체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 시찰단을 구성하여 1997년부터 매년 전자신고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로 1998년에 전자신고에 관한 첫 실험[9]이 진행되었다. 세무사회 독자적 폐쇄망인 세무사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TAINS:Tax Accountant Information Network System)의 전자우편(E-Mail)을 활용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실험하였다. 이 실험은 전자신고 모형을 구축하여, 신고항목, 본인확인, 세무사 서명, 첨부서류, 전자신고 공제 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은 1998년 7월에 장부서류의 전자데이터에 의한 보존제도를 제정하여 민간기업의 신고서를 전자데이터화 하여 제출할 것을 요망하고 있는 상태로 전산화에 착실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자신고제도의 도입 시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하며, 본인 확인, 시큐리티의 확보, 첨부서류의 취급에 관한 기술적, 법률적인 문제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9) 1998년 12월 3일 동경세무사 회관에서 제 13회 세무사 정보포럼에서 「전자신고 실험과 전자신고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V. 우리 나라에서의 電子申告制度 計劃

1. 우리 나라에서의 전자신고 시스템

재정경제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하여 종래의 정부주도경제·정경유착을 개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국정개혁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과학적인 세무행정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하여 첫째,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둘째, 국세통합전산망(TIS: Tax Integrated System)을 발전시켜 개인별로 과세정보를 평생 관리하게 하여 세무조사를 과학화하고 불로 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직접접촉을 차단하여 세무부조리를 막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인터넷 신고)제도의 도입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신고된 자료를 관리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전산프로그램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사업의 과제로 「국세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여, 1999년 5월에 채택되었다. 이 국세전자신고 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체 14억원의 예산규모로 올해 7월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기본으로 한 전자신고 시스템으로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신고를 하게된다. 첫째 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내용을 기입하여 자신의 세무신고를 행하는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납세자가 세무사와 같은 대리인들에게 의뢰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리인들은 국세청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납세자들의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국세청에 일괄 전송하는 방법이다.

2. 신고 업무 흐름과 전자신고의 필요성

국세청은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국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국세통합시스템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제세, 원천세 등의 신고서 및 과세자료, 수납자

료, 세적자료, 조사자료를 보관·처리하고 있다.

가. 신고업무 흐름

국세청의 전체 업무구성도 및 업무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그림 2〉[10]와 같다. 이를 신고관리 부문에 국한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국세청 업무 개략도 (신고 관리부문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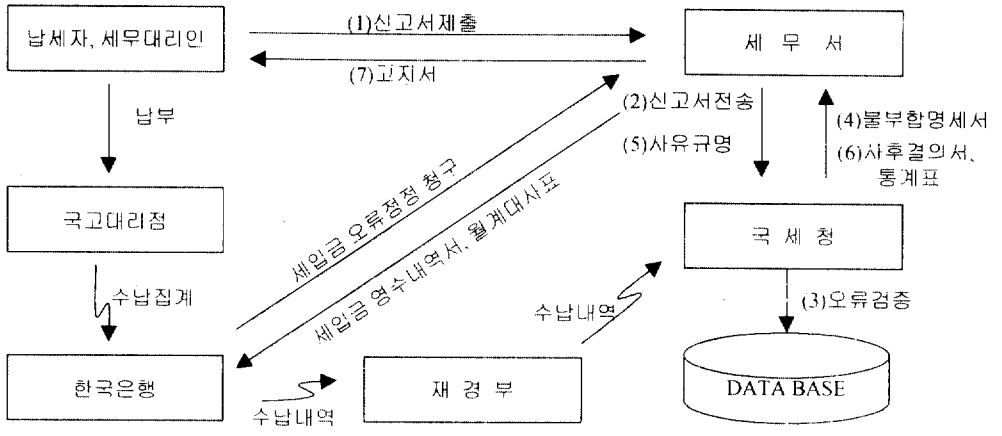

(1)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각종 자진납부 신고서를 수기작성 또는 전산매체(디스켓이나 테이프)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다.

(2) 세무서에서는 컴퓨터에 신고서를 입력하여 국세청 주전산기로 자료를 전송한다. 한편, 전산매체로 제출된 신고서는 오류를 검증하여 국세청 주전산기로 직접 전송된다.

(3) 주전산기로 전송된 신고서는 매일 오류검증 (세적검증, 이중신고 체크)후 신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4) 신고서와 수납자료를 전산 대사하여 신고납부 불 부합자를 선정하여 세무서에 불부합자 명세서를 통보한다.

(5) 세무서에서는 불 부합사유를 밝혀 주전산기에 사유규명을 입력한다.

---

10) 국세청, 「국세전자신고시스템 구축 제안사업계획서」의 pp. 4-5.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

(6) 국세청에서는 사유규명 완료 후 사후결정결의 및 당연경정결의를 하여 세무서로 사후결의서와 당연경정결의서, 각종통계표 그리고 무신고납세자 명단을 출력한다.
(7) 국세청에서는 당연경정결의분에 대한 고지서를 세무서로 출력하며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한다.

나. 전자신고의 필요성

(1) 조세행정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그림 2〉의 업무흐름 (1)에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신고서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신고서 제출이 신고 기한일에 임박하여 진행되어 장시간 대기 등이 발생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낭비와 납세불편은 국세행정 대개혁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인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현상들이다.

(2) 신고서 입력의 성력화 및 정확성 제고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신고서 건수는 1,900만건 정도이며, 과세자료는 약 3억건 정도이다.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과학적 세무행정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평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 서면에 의하여 신고되는 이러한 자료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이 과다하며, 또한 입력오류 비율도 10%이상이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신고서 입력 작업, 오류자료의 반송 및 재 제출에 과다한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입력작업의 성력화 및 입력된 자료들의 정확성을 제고시키는 문제가 국세행정 대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3) 신고서 원장관리의 과학화

모든 신고서 원장은 각 세무서 서고에 관리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신고서와 복잡한 관련서류들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컴퓨터 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들을 종이에 출력하고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장부를 용인하게 되면 컴퓨터의 출력비용, 용지대, 보관을 위한 공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이 경감된다.

그리고, 컴퓨터가 가진 기록·계산·보존·검색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일상업무에서

관리·분석·조회·확인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산기술의 발달을 세무행정에 이용하여 이러한 서류들을 전산 관리함으로써 원장관리의 과학화를 도모하며 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전자신고시스템이 관심 받게 되었다. 국세전자신고시스템 구축은 「제2건국」의 추진과제와 「국세행정 대개혁」의 과제로 선정되어,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3. 전자신고제도 도입시의 고려사항

미국 등의 선진국의 전자신고제도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큰 장점을 안겨주면서 발전하고 있다. 즉, 납세자에게는 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며, 과세관청에는 신고자료의 전산입력이 높은 정확도로 자동입력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신고제도가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순조롭게 발전할 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전자신고제도의 선진국인 미국과 우리 나라의 세무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차이를 인식하고 전자신고 선진국들의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전자신고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납세자에 대한 혜택 부여

우리 나라의 소득세 확정신고통계를 보면 총인구대비 신고인구비율은 약 2.8%[11]이다. 미국이 총인구 대비 약 50%가 확정신고를 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아주 적은 비율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확정신고건수가 적은 이유는 폭넓은 원천징수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납세자의 89%[12]에 해당하는 1,150만명의 급여소득자 대부분이 확정신고가 불필요하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의하여 모든 과세처리가 종료된다. 또한 예금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분리과세에 의한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되어 확정신고가 필요 없게 된다.

---

11) 행정자치부 주민과가 발행한 「'99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46,991,041명이다. 그리고 국세청이 발행한 「1998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299,442명으로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된다.

1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인 1,299,442명과 원천징수부과 갑종근로소득자 10,212,000명을 합산한 전체 소득세 신고인원 11,511,000명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자의 비율이 89%이다. 전체 소득세 신고인원에는 갑종근로소득자로서 확정신고를 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확정신고가 곧 환급신고(75%정도)이므로 환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가 납세자에게 크게 환영받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자신고제도가 신속히 보급되기 위해서는 이를 사용하는 납세자에게 세금환급 기간 단축 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 서면 확인서의 개선

미국의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신고 데이터를 컴퓨터로 송신하는 것과 동시에 서명한 서면 확인서를 별도로 우송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전자신고는 완전한 페이퍼레스인 것은 아니다. 신고서 첨부서류 등의 신고를 포함하여 지면신고도 병용하고 있어 이중의 수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 서명 시험사업이 1999년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9년 7월부터 「전자서명법」을 발효하여 전자서명사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 에서도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 신고시 의무화 되어 있는 원천징수서 및 의료비의 영수증 등 확정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확인방법 등이 문제가 된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미국과 같이 신고가 중복되어 이중의 수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전자화가 추진되면 종국적으로 서면서류가 필요하지 않는 전자신고로 발전할 것이다. 서면확인서 문제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 전반의 전산화 등의 추세를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부정신고에 대한 대책

전자신고에서는 납세자가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를 고쳐 부정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신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예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미국 내국세입청은 전자신고를 보급함에 따라 부정환급신고가 급증하는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했다. 신속한 세금 환급을 내세우며 전자신고제도를 보급·확대시키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전자신고의 경우 내국세입청이 홍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세금 환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국세입청은 납세신고 데이터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된 정보신고 데이터를 서로 대조하고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게 된

다. 철저하게 검토하기도 전에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 검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정신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하여 졌다. 1994년 미 내국세입청은 전자신고를 악용한 부정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부양자의 납세번호 (SSN:Social Security Number)의 확인을 강화하는 일련의 방지대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가 넘는 전자신고가 불 수리처리 되었다. 이러한 것을 염려한 납세자 및 납세 신고 대행업자들 사이에 전자신고를 그만두고 문서신고로 되돌아 가는 현상도 보였다[13].

우리 나라도 전자신고제도 도입 시에 부정신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신고 검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미국과 같은 혼란을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 개인정보 보호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정보처리능력에 힘입어 개개 국민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처리·확산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과학적인 세무행정의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기기관·공공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특별법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유관기관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축적되면 방대한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4]을 제정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다. 이 법의 철저한 시행[15]이 요구된다.

---

13) 〈표 2〉와 같이 1995년의 전자신고 이용자는 11,781,000명으로 전년의 14,019,000명보다 줄어들었다.

14) 한편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98년 12월에 「전산망 보급확정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지침을 마련하여 2000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신문 1999. 2. 22)

15) 이 법은 1994년에 제정된 것으로 위반과 관련하여 97년 28건 65명을 입건하여 19명을 구속하였

그러나, 세무당국이 보유할 개인정보는 아주 많은 량의 정보로서 그 가운데는 당연히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축적된 자료를 합성하여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변질된 정보가 조성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자기정보의 열람권 및 정정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열람권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13조)에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마. 네트워크를 통한 인증업무의 법제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네트워크상에서 기업간거래, 소비자 판매 등 모든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오픈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이므로 통신내용의 진정성 및 해킹에 관하여 불안이 상주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암호기술을 응용하여 본인인 것을 네트워크상에서 증명하는 「인증」 및 「통신내용의 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세무행정에서는 신고·신청서 등이 본인으로부터 제출되는 것인지 여부와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및 통신내용증명 업무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전자적으로 수수료 및 세금의 납부를 징수하려 할 경우 상대방의 신용 (지불능력 등)의 확인도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거래를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암호기술을 이용한 인증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기 위하여 공개열쇠의 등록 관리 및 통신당사자간의 공개열쇠의 진정성의 증명 등을 행하는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16]이 필요하게된다. 네트워크를 통한 인증업무를 세무행정에 도입하기 위하여 법제도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인증과 지불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VISA와 MasterCard가 주축이 되어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프로토콜을 제정하였다. SET은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비밀성, 익명성, 안전성, 결제의 완전성 등을 인터넷 거래에서 보증하기 위한 규격이다.

고, 98년에는 24건 85명을 입건하여 8명을 구속하였다. (정보통신부,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 1999, p. 78)

16) 우리 나라의 최상위 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9, 7, 13)

Ⅵ. 結 論

우리 나라 국세청은 1999년 7월에 「국세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1999년 1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0년 상반기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과 많은 논의와 실험을 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에서 우리 나라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5장에서 제시하였다.

미국과 같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전송함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도 「신고대행업자」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외에 세무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당연히 세무사가 전자신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소프트웨어 업자 또는 전송업무만을 수행하는 업자도 세무신고대행업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미국의 경우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자를 업자로 한정했지만,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복수의 업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업자가 출현하여 그 중에 신고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비리를 저질러, 전자신고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도 보여진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미국 내국세입청은 회계사무소와 컴퓨터 시스템 업자들에 의한 「세무 시스템 협의회」를 조직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6년 8월에 일본세무사회의 지도·감독 하에 전국회원을 가입대상으로 한 「세무사 정보 네트워크」가 개통되었다. 이 시스템은 폐쇄된 PC통신과 같은 것으로, 일세련(日稅連)의 20년간에 걸쳐 구축해 온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회원에게 공개하여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회원 가입조건은 세무사로 국한하고 있어 전문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모든 세무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신고로 원만하게 이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회계사나 세무사외에 전자신고를 대행할 업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자신고를 처음 시행한 미국의 경우, 우리 나라와는 세무행정 체계가 다르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환경도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에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자신고의 주요 역할자인 납세자, 신고 대리인, 국세청 가운데 납세자와 국세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신고 대리인의 경우 세무사법에 의하여 그 직무가 보장되어

있는 것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세무체계와 같이 회계사 및 세무사만이 전자신고의 신고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인가 등에 관한 역할의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사회시스템 전체에 많은 효율을 안겨주고 있다. 세무행정에서도 효율을 향상시키고 납세자 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일례로 본 논문에서는 전자신고제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변혁이 납세자에게 큰 이익과 조세행정의 선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 분야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국세청, "1998 국세통계연보", 1998.

국세청, "국세행정 년차보고서", 1998.

국세청, "99년도 국세행정운용방향", 1999. 4.

국세청, "국세 전자신고 시스템 제안 사업계획서", 1999.

박제완, "신고납부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착을 위한 세무행정의 과학화", 한국행정연구, 1997년 여름호 (제 6권 제2호). pp.88-111.

서희열, 이강호,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시대의 태동과 과세문제", 한국회계학회, 1998. 12. pp.139-160.

서희열, 이강호,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999. 2. pp.141-178.

이강호, "인트라넷", 한국정보처리학회, 1997. 1.pp.71-80.

정보통신부,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 1999. 9.

정보통신부, "Cyber Korea 21", 1999.

정예택, "EDI형 조세신고·납부자동화망 구축", 월간 정보화사회, 1996년 6. pp.28-33.

재정경제부, "주요국정개혁과제", 1999. 3.

http://itproject.nca.or.kr

Antoinette Alexander, "1999 E-filing on the rise", Accounting Technology, Jun 1999.pp.40-47.

Brad Skillman, "Fired up at the IRS", Accounting Technology, Jan 1998. pp.12-20.

Demery Paul, "Momentum shifting to Windows 1040 software", Practical Accountant, Oct 1996. pp.57-67.

Kahan Stuart, "Is widespread e-filing inevitable? ", Practical Accountant, Nov 1998. pp.22-29.

Karen Ma, "Electronic filing surges", Accounting Technology, Jun 1998. pp.34-42.

Langer Joseph W, "Tax software adapts to meet technology", Taxation for Accountants, Oct 1996. pp.211-235.

Langer Joseph W. "Return preparation software adapts to new technology", Journal o f Taxation, Nov 1996. pp.294-317.

Mark Henricks, "Sorting out electronic filing", Office Systems, Feb 1999. pp.30-34.

Parker Cary, "Return preparation software for the '99 filing season", Journal of Taxation, Nov 1998. pp.282-309.

Susan W Martin, "IRS modernization and E-filing strategies", The Tax Advisier, Feb 1999. pp.121-122.

Susan W Martin, "ETA update", The Tax Adviser, Sep. 1999. pp.681-682.

http://www.irs.gov/prod/elec_svs/

石村耕治, "アメリカの制度と現狀(1)", 稅務弘報, Vol 44. No 9. 1996. 9. pp.131-139.

水野忠恒, "コンピュータ・ネットワークと電子申告・資料情報制度", ジュリスト, 1997. 8. pp.1-15.

有賀武夫, "電子帳簿の活用と電子申告への展開", 稅務弘報, Vol 47, No 1. pp.95-103.

日本閣議決定,"行政情報化の推進基本計劃について", 1997年 12月.

日本總務省, "申請・届出等手續の電子化に係るフォローアップの結果", 1998年.

http://www.alpha-web.ne.jp/tozei/1/densisinkoki.html

http://zeirishi.gr.jp/tains/tains.html

A Study on The Adoption of Electronic Filing System in the Korean tax Administration

Kang Ho Lee
Full-time lecturer, Korean Christian university

Recently there has been dramatic change in networking technology and muti-media technology, together with rapid technological change in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is driven by accelerated utilization of internet. This change has led to the emergence of electronic commerce and cyber shopping mall which forced traditional transaction activities to be transformed. This trend also stimulated the informatization of society in general, includ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pecifically, there has been various attempts to increas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by introducing electronic filing system in the US, Canada and Australia.

In July 1999, The National Tax Service initiated a project for developing an electronic fil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policy issues in adopting electronic filing system, reflecting the experience of Japan, US which have already adopted and developed it.

Korean income tax returns are different from in the US. Most of Korean income tax returns are based on withholding and year-end adjusting, while the US income tax returns are based on final returns. Due to this difference, it is necessary to offer incentives for taxpayers to file taxes if electronic filing system were to be successfully adopted. It is also required to remove paper certification and to make protective methods towards dishonest tax filing. It is urgent to establish improved law system to support certification procedure over network and to protect privacy which are the result of reverse effect from digit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shall be a big change in Korean tax agents, as occurred in advanced countries which have adopted electronic filing system.

〈Keyword〉 Electronic Filing System, National Tax System, Information of Tax Administration.